

I

민주평통 제20기 지역대표 자문위원 위촉 안내

① 목 적

-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(6.1)에서 선출된 지방의원중 자문위원 위촉을 신청하는 인사를 지역대표 자문위원으로 위촉(7.1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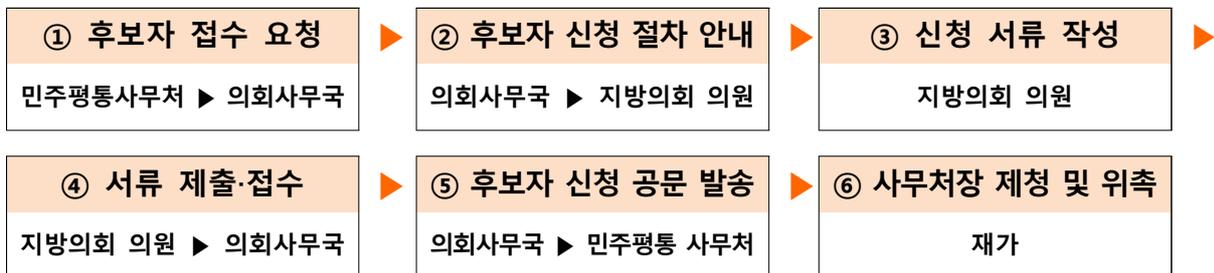
② 법적 근거

- 「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」 제10조 제1호
 - 「지방자치법」에 따라 해당 지역주민이 선출한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 및 구·시·군의회의 의원인 인사
- 「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」 제4조 제1항
 - 지방의회 의원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

③ 위촉 대상 및 임기

- 지방의회 의원 : 3,865명
 - 광역의회 의원 : 872명
 - 기초의회 의원 : 2,988명
 - 교육의원 : 5명 *제주특별자치도 해당
- ※ 단, 「자문위원 후보자 서류」를 기한 내에 제출한 지방의회 의원에 한함.
- 임기 : 2022. 7. 1. ~ 2023. 8. 31.

④ 위촉 절차



5 협조 사항

- 제9대 동작구의회 의원 당선인께서는 자문위원 후보자 카드 및 활동 동의서【서식 2】를 작성하여 의회사무국에 제출

※ 신청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홈페이지(www.puac.go.kr)에 접속하여 '제20기 지역대표 후보자 신청 안내'에서 다운로드 가능

- 후보자 신청 서류 작성방법

- 소속(의회명) : 서울특별시의회, 서울종로구의회 등 해당 의회 기재
- 의원구분 : 광역의회, 광역비례, 기초의회, 기초비례, 교육의원 중 택1
- 소속협의회는 자택 주소지 기준 원칙

자문위원 후보자(지방의원)는 「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」내용을 숙지한 후, 자문위원으로 위촉될 경우 자문위원 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것 등에 대하여 후보자 카드 및 활동 동의서 하단의 '동의함'에 체크하고 성명과 자필 서명(필수)

6 제출 기한 : 2022. 6. 15.[수] 限

※ 의원등록 기간(6.13.~6.15.)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【서식 2】

자문위원 후보자 카드 및 활동 동의서

소속(의회명)				의원구분	
성명	한글		성별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남 <input type="checkbox"/> 여 <input type="checkbox"/>	주민등록번호	
주소 (*도로명주소)	집	(우)		<input type="checkbox"/>	우편물 받을주소
	직장	(우)	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
연락처	휴대폰			이메일	
	직장			팩스	

1. 본인은 「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」 제32조와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15조 및 제23조에 따른 「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내용」을 숙지하고 이에 동의합니다.

2. 본인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서 맡은 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며, 직무수행에 불성실할 경우 「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」 제16조 제2항에 의거 위촉이 해제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.

※ 자문위원 위촉해제 사유

- 자문위원 위촉 결격 사유에 해당할 때
- 직무수행이 불성실할 때
 - 위촉 후 6개월 이내에 활동 실적이 전무한 경우
-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
- 자문위원 직을 이용하여 정치적 중립을 심각히 훼손한 경우

3.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자문위원 위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4. 위 1~3의 내용에 대한 동의 확인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

년 월 일

작성자 성명 (인 또는 서명)

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내용

<p>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</p>	<p>성명, 주민등록번호, 생년월일, 성별, 주소(주택, 사무실), 휴대폰 번호, 전화번호(사무실), 팩스번호, 이메일(E-mail) 주소, 직업, 학력사항, 경력사항, 사진 등</p>
<p>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</p>	<p>제공하신 정보는 자문위원 위촉 관련 정보 제공, 신청자 사후 관리 등을 위해서 사용합니다.</p> <p>① 본인 확인에 이용 ② 후보자와의 연락 및 정보 전달 등에 이용 ③ 대외기관(국회 등) 자료 요구 시 최소 범위 내에서 제출</p> <p>* 단, 이용자의 기본적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(인종 및 민족, 사상 및 신조, 정치적 성향 등)는 수집하지 않습니다.</p>
<p>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</p>	<p>수집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준영구이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</p>
<p>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</p>	<p>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자문위원 위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</p>

※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는 제출하신 「자문위원 후보자 카드 및 활동 동의서」의 서명·날인으로 같음합니다.

<작성예시>

② 자문위원 후보자 카드 및 활동 동의서

소속(의회명)		서울특별시의회		의원구분	광역의회 의원
성명	한글	홍길동	성별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남 <input type="checkbox"/> 여	주민등록번호	850101-10000000
주소 (도로명주소)	집	(우) 04605 서울시 중구 장충대로 84(장충동 2가 209)		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우편물 받을주소
	직장	(우) 04519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5(태평로1가 60-1)			<input type="checkbox"/>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
연락처	휴대폰	000-0000-000		이메일	
	직장			팩스	

- 본인은 「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」 제32조와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15조 및 제23조에 따른 「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내용」을 숙지하고 이에 동의합니다.
- 본인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서 맡은 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며, 직무수행에 불성실할 경우 「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」 제16조 제2항에 의거 위촉이 해제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.

※ 자문위원 위촉해제 사유

- 자문위원 위촉 결격 사유에 해당할 때
- 직무수행이 불성실할 때
 - 위촉 후 6개월 이내에 활동 실적이 전무한 경우
-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
- 자문위원 직을 이용하여 정치적 중립을 심각히 훼손한 경우

3.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자문위원 위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4. 위 1~3의 내용에 대한 동의 확인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

0000년 00월 00일

작성자

성명 홍길동 (인 또는 서명) 홍길동

II

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일반현황

1

기능

<설치근거 : 대한민국헌법 제92조>

“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
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.”

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
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함(「민주평통법」 제2조)

- 통일에 관한 국내외 여론 수렴
- 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 도출
- 통일에 관한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의 결집
- 그 밖에 대통령의 평화통일정책에 관한 자문·건의를 위하여
필요한 사항

2

연혁

- '80. 10. 27. : 『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』 설치(헌법 제68조)
- '81. 03. 14. : 「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법」 공포
- '81. 06. 05. : 제1기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출범
- '87. 10. 29. : 『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』로 기관명 변경(헌법 제92조)
- '88. 02. 25. : 「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」 시행
- '21.09.01. : 제20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

3

조 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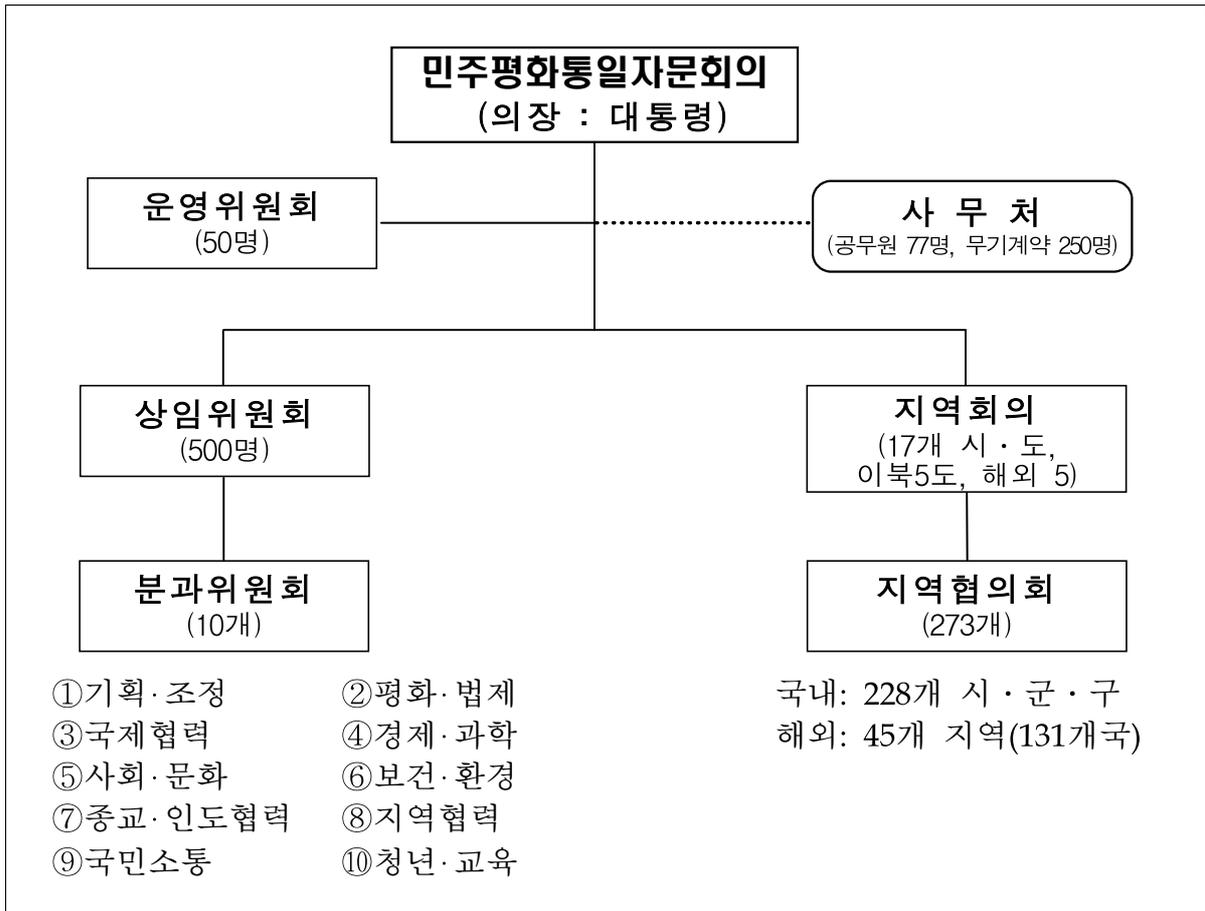
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

○ 자문위원 : 제20기 20,000명 (국내 16,100명, 해외 3,900명)

◇ 자문위원의 역할

- 민주평통의 기능 수행을 위해 다양한 평화통일활동을 전개
- 법정회의 참여 및 지역회의·협의회 사업 추진
 - 전체회의, 지역회의 참여 : 임기중 각 1회
 - 정기회의 참여 : 분기별 1회
 - 지역회의·협의회 평화통일활동사업 등
- 온라인 및 SNS 평화통일활동(온라인 통일정책건의, 통일여론조사)

○ 조직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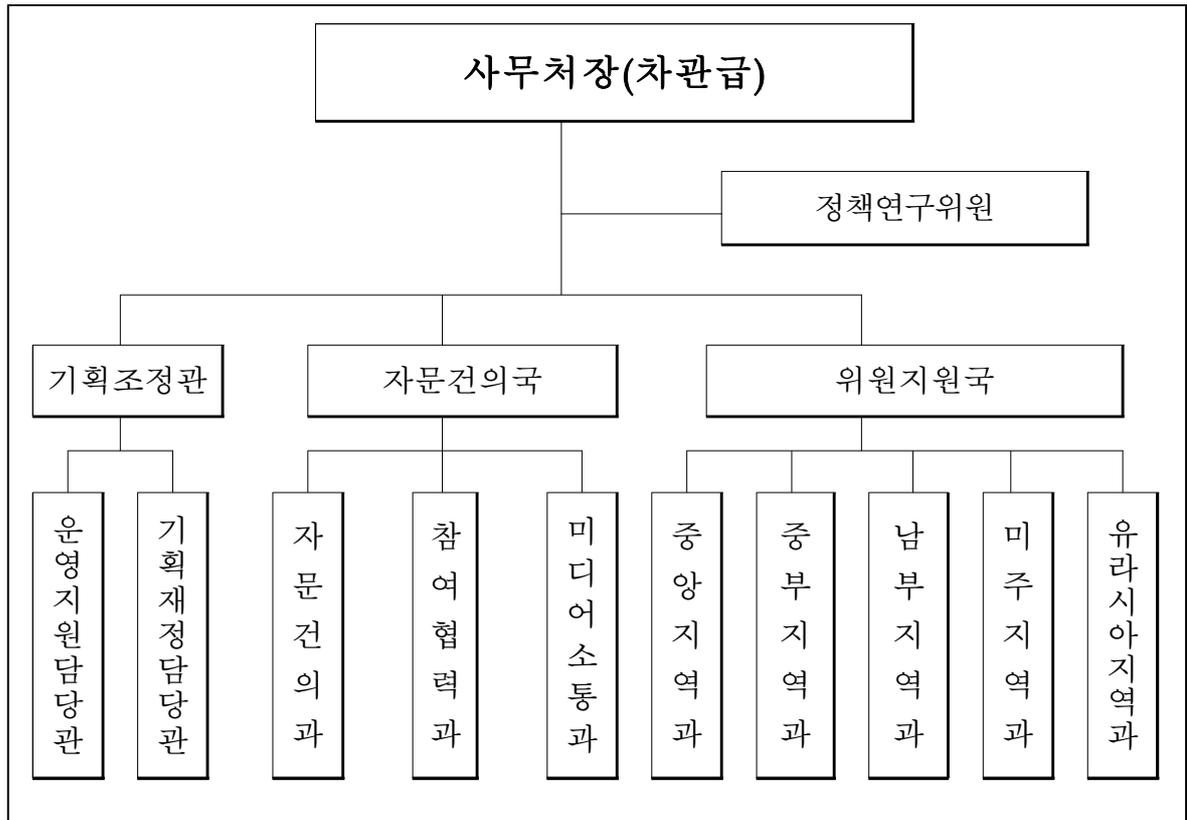


2 사무처

o 직무

-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 및 국내외 지역회의·지역협의회·자문위원 활동 지원

o 조직(1관, 2국, 정책연구위원, 10과)



o 정원 : 총 77명

계	정무직	고공단	3·4급	4급	4·5급	5급	6급 이하
77	1	3	3	8	2	19	41

4 소관 법령

- o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(법률 제13564호, 2015.12.15., 일부개정)
- o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(대통령령 제30006호, 2019.7.30., 일부개정)
- o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직제 (대통령령 제31998호, 2021.9.24., 일부개정)